

1. 개정이유

고엽제후유의증 질환에서 고엽제후유증으로 전환된 침샘암과 담낭암에 대한 상이등급별 인정기준을 신설하여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판정이 보다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침샘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(안 별표 4 제2호나목 및 제4호나목)

귀·코·입의 장애 7급 2505에 2)를 신설하고,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6급1항 4113, 6급2항 4114, 7급 4115에 각각 5), 9), 5)를 신설함

상이등급 및 분류번호	장애내용
7급 2505	2) 침샘암 진단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
6급1항 4113	5) 침샘암 치료 후 안면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(안면마비 평가기준 6단계인 사람을 말한다)
6급2항 4114	9)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고등도 이상의 마비가 있는 사람(안면마비 평가기준 4-5단계인 사람을 말한다)
7급 4115	5)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등도 이상의 마비가 있는 사람(안면마비 평가기준 3단계인 사람을 말한다)

나. 담낭암의 등급별 인정기준을 정함(안 별표 4 제5호나목)

흉복부장기 등의 장애 5급 5106과 6급3항 5110에 각각 12)와 10)을 신설함

상이등급 및 분류번호	장애내용
5급 5106	12) 담낭암(담도암 포함)으로 채집이지장절제술, 대량간절제술, 침습장기 합병절제술 등의 광범위한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
6급3항 5110	10) 담낭암(담도암 포함) 진단 후 결과를 관찰 중이거나 담낭절제술, 간외담관절제술, 제한적 간절제술 등의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○○○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입법예고(2020. 2. 00. ~ 0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일부개정안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4 제2호나목 2)의 7급 2505 장애내용란에 2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) 침샘암 진단 후 경과를 관찰 중인 사람

별표 4 제4호가목에 14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4) 침샘암의 안면마비 정도는 House - Brackmann 평가기준에 따른다.

별표 4 제4호나목의 6급1항 4113, 6급2항 4114, 7급 4115 장애내용란에 각각 5), 9), 5)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5) 침샘암 치료 후 안면이 완전히 마비된 사람(안면마비 평가기준 6단계인 사람을 말한다)

9)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고등도 이상의 마비가 있는 사람(안면마비 평가기준 4-5단계인 사람을 말한다)

5) 침샘암 치료 후 안면에 중등도 이상의 마비가 있는 사람(안면마비 평가기준 3단계인 사람을 말한다)

별표 4 제5호나목의 5급 5106, 6급3항 5110 장애내용란에 각각 12)와 10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12) 담낭암(담도암 포함)으로 췌십이지장절제술, 대량간절제술, 침습 장기 합병절제술 등의 광범위한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

10) 담낭암(담도암 포함)으로 진단 후 경과를 관찰중이거나 담낭절제술, 간외담관절제술, 제한적 간절제술 등의 근치적 절제술을 받은 사람
별표 4 제4호나목의 3급 4110의 장애내용 4) 중 ‘체간 침범을 보이며’를 ‘고도의 체간 침범을 보이며’로, 7급 4115의 장애내용 4) 중 ‘과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’을 ‘과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경도로 편측 침범을 보이는 사람’으로 한다.

별표 4 제5호나목의 7급 5111의 장애내용 12) 중 ‘외상 후 발생한 복벽 헤르니아 수술을 하였으나’를 ‘외상 후 발생한 복벽에 헤르니아 수술을 했으나’로 한다.

별표 5 제Ⅲ호 1. 6급2항 이상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종합 판정기준표 아래 비고 중 ‘두 번째로 높은 상이등급을’을 ‘나머지 상이등급 중 하나의 등급을 선택하여’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